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식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무선국의 준공신고서 및 자기적합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14조제3항·제4항, 별지 제38호의2, 별지 제39호의2)

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4항, 별지 제41호의3)

다.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의 신고서류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43호의2)
교육·훈련등의 계획 신고시 별지의 신고서와 실시계획, 장치제원 제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과 같다.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제15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영 제45조제7항”을 “영 제4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5조제9항”을 “영 제45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과 같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7조의2) 중 “영 제53조의2제1항”을 “영 제53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의 신고서 등) 법 제29조제4항 및 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등의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교육·훈련등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등의 실시계획

2. 사용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계통도 포함)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전파법」 제24조제2항”을 “「전파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전파법」 제24조제4항”을 “「전파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파법」 제24조제3항”을 “「전파법」 제24조제4항”으로,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의3서식(중전의 별지 제43호의2서식) 중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을 “제2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의2 서식과 같다.</u> <u>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 2서식과 같다.</u>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u>법 제24조제2항·제58조제3항</u> 및 <u>영 제43조</u> 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u>법 제24조제3항</u> ----- ----- ----- -----.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생략) ② <u>법 제24조제3항·제58조제3항</u> 및 <u>영 제45조제7항</u> 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 서식과 같다. ③ <u>영 제45조제9항</u> 에 따른 무선국 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u><신 설></u> <u><신 설></u>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24조제4항</u> ----- --- <u>영 제45조제9항</u> ----- ----- -----. ③ <u>영 제45조제11항</u> ----- ----- -----. ④ <u>영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과 같다.</u> <u>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의 신고서 등) 법 제29조제4</u>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항 및 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등의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조의2서식의 교육·훈련등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등의 실시계획
2. 사용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계통도 포함)

제17조의3(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5제1항-----

- 별지 제43호의3서식-----.

무선국 준공신고서

(「전파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시설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정보 통신 공사 업자	법인명	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개설허가·신고 (변경 포함)문서번호		준공기한	
무선국명 및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용도지역(전자파강도 보고 대상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전파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무선국을 준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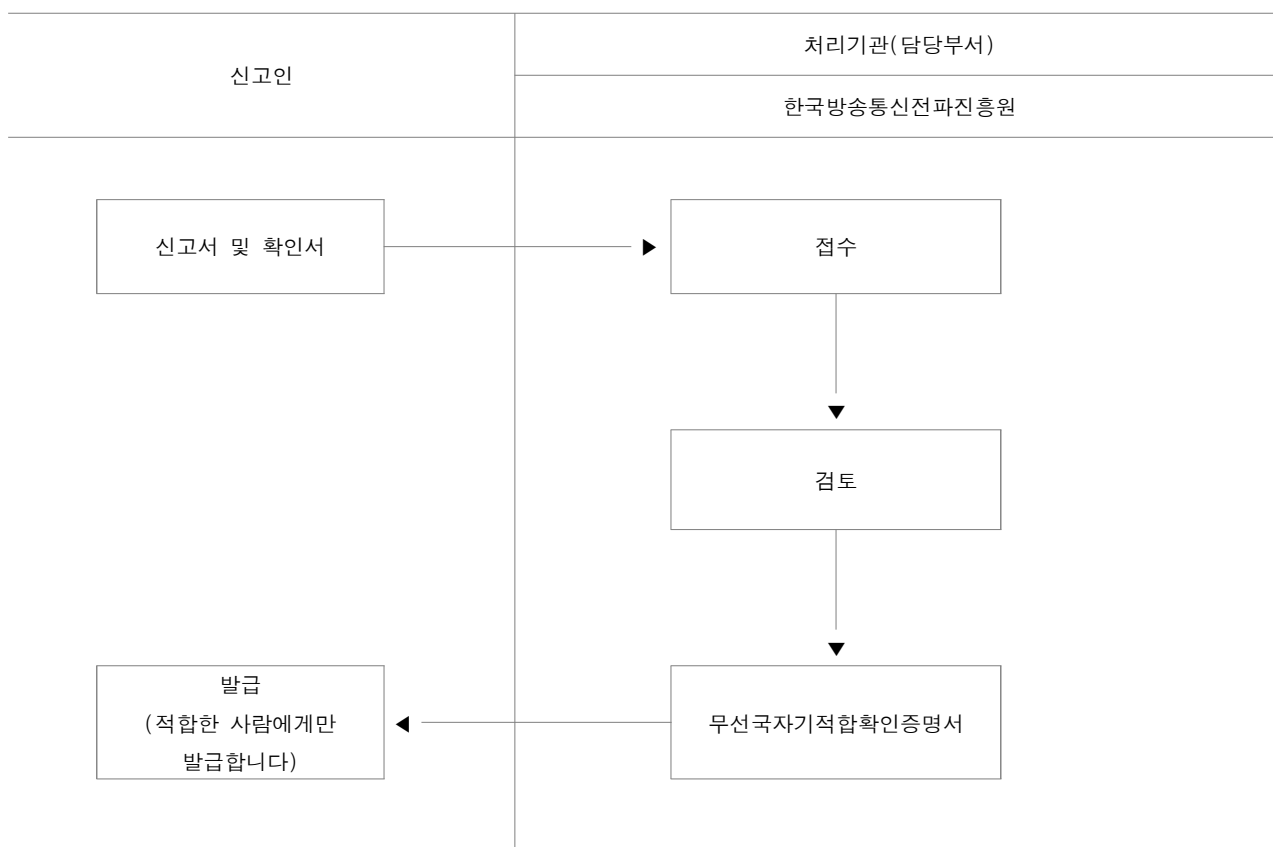
첨부서류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재요령

용도지역: 송신인테나가 설치된 곳의 지역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적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송신인테나가 설치된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용도지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작성방법

1. ①란: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등 자기적합확인 대상 무선국의 일반사항을 기재합니다.
 - 가. (1)란: 해당 무선국의 시설자명을 적습니다.
(예)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나. (2)란: 해당 무선국의 허가번호(15자리)를 적습니다.
 - 다. (3)란: 해당 무선국의 호출명칭을 적습니다.
 - 라. (4)란: 해당 무선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을 적습니다.
(예): 5G-NR, LTE, W-CDMA 등
 - 마. (5)란: 해당 무선국의 총 장치수를 적습니다.
2. ②란: 무선국의 설치장소 등 위치정보를 기재합니다.
 - 가. (1)란: 무선국의 설치장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 나. (2)란: 무선국의 위도, 경도 좌표를 적습니다.
3. ③란: 확인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4. ④란: 측정에 사용한 측정장비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가. (1)란: 측정에 사용한 계측기의 종류를 적습니다.
(예) 스펙트럼 분석기, 방향성 결합기, 감쇠기, DC블록 등
 - 나. (2)란: 계측기 및 부대품별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OO전자(MS00000A, 00000)
 - 다. (3)란: 측정장비의 최근 교정일자를 적습니다.

장치 구분		제○장치					
가. 대조확인							
① 송수신기	(1) 제조사		(2) 적합성평가번호		(3) 기기명칭		(4) 기기 일련번호
② 전파 및 주파수	(1) 전파형식		(2) 주파수			(3) 출력	
			송신(TX)		수신(RX)		
③ 안테나계	(1) 안테나설치대 위치		(2) 안테나설치대 형태		(3) 안테나 형식		(4) 안테나 기수
	(5) 안테나 이득(dBi)		(6) 안테나 지향각(°)		(7) 급전선 종류 / 길이		(8) 안테나 고각(°)
④ 전원설비 및 안전시설	(1) 전원설비		(2) 안전시설			(3) 보호장치	
	주전원	예비전원	낙뢰보호 장치	접지시설	기타	퓨즈	자동차단기
⑤ 기타사항							
나. 성능확인							
⑥ 송신장치	구 분	지정(측정범위)		측정값		단위	
	(1) 안테나공급전력	-					
	(2) 점유주파수대역폭	-					
	(3) 주파수허용편차	-					
	(4) 인접채널누설전력	-					
	(5) 불요발사						
⑦ 수신장치	부차적 전파발사						
⑧ 종합시험							

작성방법

1. ①란: 무선기기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②란: 전파형식 및 주파수 등 전파발사 관련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 가. (2)란: 주파수는 송·수신을 구분하고, 단위를 필수로 기재합니다.
3. ③란: 안테나 및 안테나설치대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안테나설치대는 안테나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 가. (1)란: 안테나설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기재합니다.
 - 옥내: 안테나설치대가 건물내부에 설치
 - 옥외: 안테나설치대가 옥상, 옥탑 등 건물외부 또는 평지, 산 등 지면에 설치
 - 지하: 안테나설치대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에 설치
 - 터널: 안테나설치대가 고속도로 터널, 철도 터널 등 터널에 설치
 - 나. (2)란: 안테나설치대의 형태를 기재합니다.
 - 철탑: 철골이나 철재 소재의 탑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
 - 강관주: 주로 나대지에 강철 파이프 소재의 타워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
 - 통신주: 주로 나대지에 콘크리트, 강철 소재의 전주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
 - 쌍통신주: 동일규격, 동일소재의 통신주 2개의 하단을 송·수신장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로 연결된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
 - 원폴: 주로 건물 상면에서부터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하나의 폴(pole)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
 - 프레임: 건물위에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가진 “—”, “ㄱ”, “ㄷ”, “ㄹ” 등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
 - 모노폴: 건물상면 난간에서부터 높이 2미터 이하의 독립된 폴(Pole) 형태(단일or다중)로 설치한 구조물
4. ④란: 전원설비 동작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O/X 표기)합니다.
 - 가. (1)란: 무선설비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전원설비(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O/X 표기)합니다. (단, 예비전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란의 작성은 생략합니다.)
 - 나. (2)란: 무선설비규칙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낙뢰보호장치, 접지시설(안테나계가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 기타 사항 등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를 기재(O/X 표기)합니다.
 - 다. (3)란: 무선설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안테나공급전력이 10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한함) 설치 여부를 기재(O/X 표기)합니다.
5. ⑤란: 대조확인 사항 중 위 각 란에 기재되지 않은 특이사항 또는 참고사항(기지국 PCI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6. ⑥,⑦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을 준용하여 각 항목별 측정값을 기재합니다. (단,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정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의 경우에는 주파수허용편차, 인접채널누설전력, 불요발사, 부차적 전파발사 측정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⑧란: 무선설비의 동작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교신시험 등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 된 전송속도(데이터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값을 기재합니다.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허가(신고) 관계 사항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무선국 만 해당합니다)			개설허가 신고(변 경 포함) 연월일		
		허가번호					
준공기한	연장 전	. . . 까지		연장 후	. . . 까지		
연장이유							

「전파법」 제24조제3항 및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무선국 []전파응용설비)의 준공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전파관리소장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단,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45일)
신청인 (시설자)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청 사유					
무선국명 및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정기검사 희망지				용도지역(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정기검사 희망일					

「전파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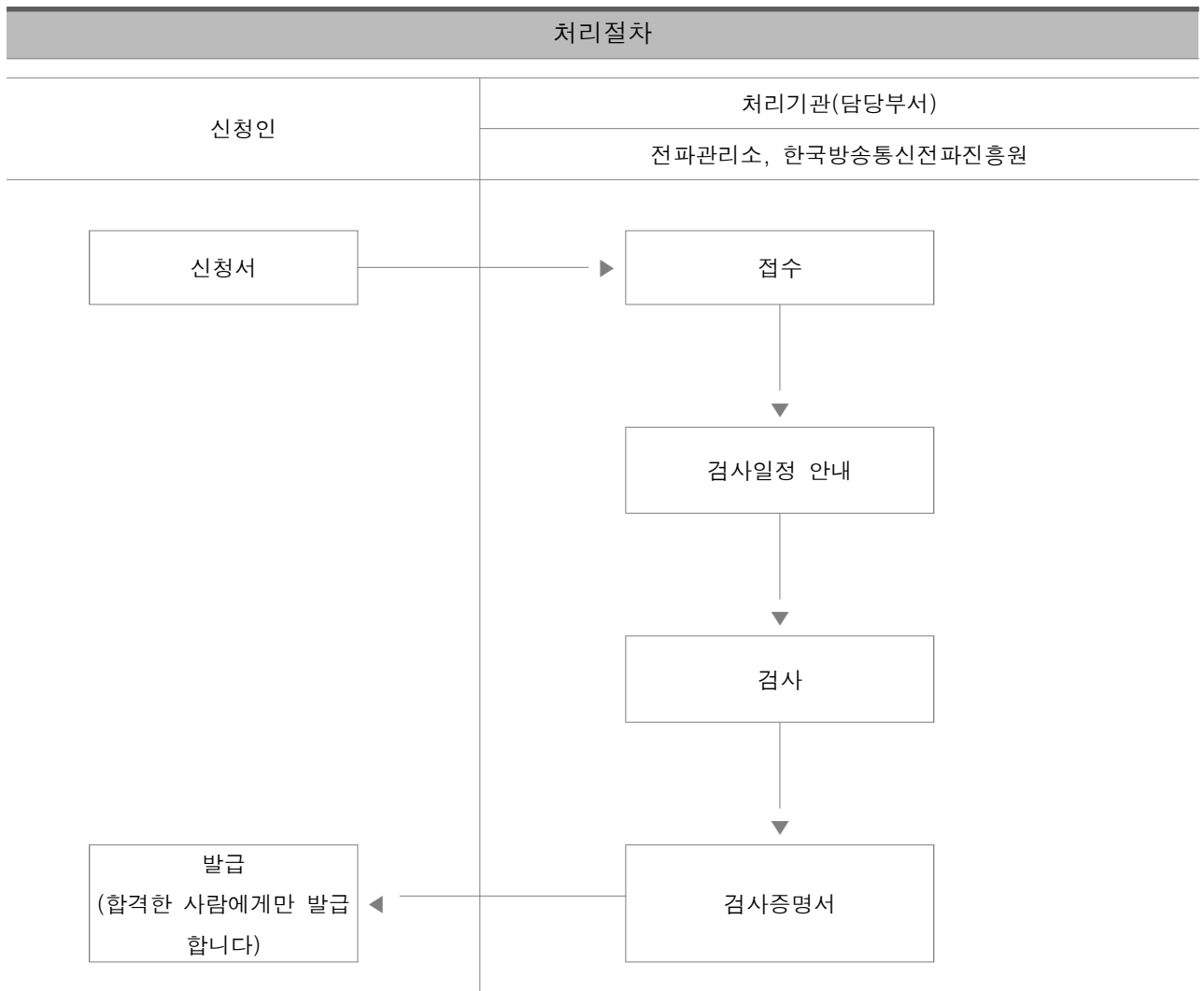
○○ 전파관리소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작성방법

용도지역: 송신안테나가 설치된 곳의 지역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적습니다. 토지이용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송신안테나가 설치된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용도지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검사증명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또는 호출부호			
검사일		다음 검사 예정시기	
검사관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치사항 및 권고사항			

「전파법」 []제24조제1항
[]제24조제5항
[]제24조제6항
[]제24조제8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공(변경)
[]정기
[]수시
[]사용승인 운용

검사 결과

합격하였으므로 「전파법」 제24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시설자명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또는 호출부호		
확인증명일		
검사관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파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전파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뒤쪽)

무선국 검사관증

사 진

3cm × 4cm

(성 명)

() 전파관리소장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인

No:

CERTIFICATE OF INSPECTOR

(무선국 검사관증)

Organization(소속):

Name(성명):

Date of Birth(생년월일):

위 사람은 「전파법 시행령」 제45조 제11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Director-General of () Radio
Management Office
President of Korea Communications
Agency**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4mm×86mm[PVC(비닐) 980.4g/㎡]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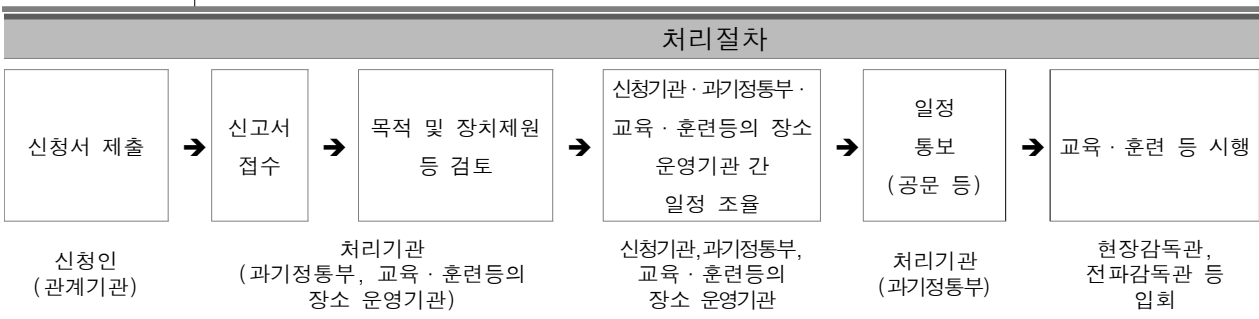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신청개요					
사용목적					
희망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30일 이후)			
※ 일시는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여 희망하신 일정에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소					
제조업체명			담당자명		
			연락처		
수량					
인가번호 (인가 받은 장치에 한함)					
전파차단장치 종류 (사용 대상 기준)		☐ 드론 (☐ 휴대용 ☐ 차량이동형 ☐ 고정형) ☐ 폭발물			
장비명					
장비제원		주파수			
		출력(EIRP)			
		사용전원			
		장치일련번호 (시제품 제외)			

신청일
신청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용 예정인 전파차단장치의 전파 주파수 및 기술규격(출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전파차단장치 ([]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연락처	

① 인가신청목적	
② 명칭	
③ 제조자명	
④ 수량	
⑤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전파법」 제2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제출서류	1. 「전파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관련 자료 3.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차단방법, 동작원리, 부가설비 등을 망라하여 작성합니다) 4.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 신청시 지참물 : 신청자(법인인 경우 담당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연 락 처	(044) 202 - 4953
	(044) 202 - 4957